

정부, 가축계열화 생산사업 추진요령 고시

◇…농림수산부는 지난 5월 23일 축산법 제1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가축계열화 생산사업을 조기에 정착시켜 사육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고, 유통단계를 축소해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가축계열화 생산사업 추진 요령」을 농림수산부 공고 제91-29호로 제정, 고시했다.

이 요령은 6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돼지의 경우 계열화 사업대상 규모는 3만두 이상, 사육농가당 500~2,000두 수준으로 정했다.

다음은 요령 전문이다. <편집자 주>◇

가축계열화 생산사업 추진요령

1. 목 적

축산법 제1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가축계열화 생산사업(이하 “계열화 사업”이라 한다)을 조기 정착시켜 사육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고 유통단계 축소 등의 구조개선으로 경비의 절감과 양질의 규격화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축산물 개방화에 대비한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다.

2. 계열화 사업대상 가축 및 규모

- 돼지 : 30천두 이상(사육농가당 : 500~2,000두 수준)
- 닭 : 1,000천수 이상(사육농가당 : 2~5만수 수준)

3. 계열화 사업자 지정

① 가축계열화 생산사업을 위하여 정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계열화 사업자 지정신청일 6월전부터 제2에 정하는 규모의 20% 이상 계열화사업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양돈, 양계협동조합은 사업 실적이 없어도 계열화사업과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계열화 사업자로 지정된자(이하 “지정 계열화사업자”라 한다)는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2에서 정한 규모 이상으로 계열화 사업을 정착시켜야 한다.

4. 계열화 사업 방법

① 지정계열화 사업자는 농가와 계약에 의하여 원자재(어린가축, 사료,약품 등)를 공급하여 생산된 가축을 자체에서 처리·가공 및 판매를 전담하고 계약농가에 사육수수료의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완전 계열화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계약농가와와의 계약사항에는 천재지변 또는 성실한 관리하에 질병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완전 계열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정계열화 사업자는 기본시설로서 돼지의 경우 도축장·가공장·판매장을, 육계의 경우 도계장·부화장·

종계장을, 산란계의 경우 계란집하장·부화장·종계장을 농림수산부 장관의 지정일로부터 2년이 내에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 계열화 사업자는 완전계열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시설을 모두 갖추는 때까지는 계열농가에 의해 생산된 가축의 매취를 위해 “상·하한가격”을 농가와 계약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계열화 사업자 지정 절차

① 계열화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일정지역 단위로 계약농가를 확보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수산부 장관에 신청한다.

가. 계열화 생산사업 실적

나. 계약농가 확인서

다. 계열화 생산사업자의 경력

라. 사업계획서

- 원자재 공급계획서

- 계약서 내용(계열농가 및 원자재 등의 공급자와의 계약서)

- 생산물의 처리방안

- 계약농가의 지도방법

- 판매계획서

- 투자계획서

- 기타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신청자가 계열화 사업을 육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의견서와 지도계획서를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6. 계열화 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지정계열화 사업자에 대하여 축산물 처리 및 가공시설 등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에 우선하여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계약농가 보호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수급조절

계열화 사업자는 축산물 가격 하락이 예상될 경우에는 사육조절을 실시하여 큰폭 하락 경우에는 시장 출하를 제한하며 자체 비축을 실시함과 동시에 정부의 수급 및 가격안정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8. 기존계열화 사업자

이 공고 시행전에 정부로부터 가축계열화 사업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3 및 제4의 ③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92년 12월 31일까지 이 공고의 기준에 맞도록 계열화 사업을 정착시키지 못할 경우('91년 6월 기준 최근 2년간 계열화 규모 및 사업추진 실적 부진 업체 포함)에는 지정계열화 사업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9. 보 고

지정계열화 사업자는 년2회(6월, 12월) 원재공급실적, 가축생산실적 및 판매실적(지정계열화 사업자 자체 상표에 의한 판매 물량은 별도로 기재) 등을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10. 세부지침

이 공고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계열화 사업자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시행한다.

11. 시행일

이 공고는 199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